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성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88 발의연월일: 2020. 11. 20.

발 의 자: 권성동・송기헌・구자근

윤창현 • 태영호 • 서정숙

한기호 · 이철규 · 유상범

이양수 · 정청래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규정은 사치·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1973년에 도입되었음.

그런데 47년이 흐른 현재,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여행 및 레저 활동의 보편화, 인터넷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의도입 등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농어촌 지역에 휴양·피서·전원생활용 주거시설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.

또한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따라서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형 태 및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장려하며,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 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별장에 대한 취 득세 및 재산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(안 제13조제5항, 제16조제 1항 및 제111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 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58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별장"을 "고급주택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별장·고급주택"을 "고급주택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1항제3호 중 "별장, 골프장"을 "골프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2항 중 "고급주택, 별장"을 "고급주택"으로 한다.

제111조제1항제3호가목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별장 취득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5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별장 재산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3조(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	제13조(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		
중과) ① ~ ④ (생 략)	중과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		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⑤		
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			
경우(<u>별장</u> 등을 구분하여 그	<u>고급주택</u>		
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			
한다)의 취득세는 제11조 및			
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			
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			
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			
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골프장은			
그 시설을 갖추어 「체육시설			
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			
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(시설			
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			
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			
같다)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			
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			
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			
우에도 적용하며, <u>별장·고급주</u>	고급주택		
<u>택</u> ·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			
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			
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			

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 토지로 본다.

- 1. 별장: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 고 휴양·피서·놀이 등의 용도 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 속토지(「지방자치법」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 는 면에 있는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 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는 제외한다). 이 경우 별장 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2. ~ 5. (생략)
- ⑥ ~ ⑧ (생 략)
- 제16조(세율 적용) ① 토지나 건 | 제16조(세율 적용) ① ------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 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.
 - 1. 2. (생략)
 - 3. 제13조제5항에 따른 <u>별장,</u> 골프장, 고급주택 또는 고급

<삭_	제>	

2. ~ 5. (현행과 같음) ⑥ ~ ⑧ (현행과 같음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골프

장----

오락장

② 고급주택, 별장,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중 축·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중축·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 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.

③ ~ ⑥ (생 략)

제111조(세율) ① 재산세는 제110 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주택

<u>가.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</u> <u>별장: 과세표준의 1천분의</u> 40

나. (생 략)

- 4. 5. (생략)
- ②・③ (생 략)

② 고급주택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11조(세율) ①
1.•2. (현행과 같음)
3
<u><삭 제></u>
나. (현행과 같음)
4. • 5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